

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94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 함으로써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- 물순환 선도도시 건설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중수도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 등 경보기기 설치 근거 마련(안 제4조제6호)
- 나. 물순환 선도도시 건설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내 중수도시설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(안 제4조제7호)

□ 개정조례안 : 불임1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2
-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3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-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6. 11. 14. ~ 2016. 12. 5. (21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불임4
- 방침결정문 : 불임5

【붙임1】

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공중화장실에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.

7. 공중화장실에 물 절약을 위한 중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환경정책과
입안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환경정책과장 강상봉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수질보전계장 박옥란
	담당자 성명·전화	정우진 (행정 2244)

【붙임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설치기준) ① (생략) 1. ~ 5. (생략)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	<p>제4조(설치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공중화장실에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7. <u>공중화장실에 물 절약을 위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